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2
----------	-----

발의년월일 : 1998. 6. 16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제안이유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98. 4. 30 자로 개정 공포되었고 우리도의회 의원의 정수가 40명에서 27명으로 줄게되어 위원회 및 위원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수는 6~8인 이내로 함. (안 제2조)
- 기획경제위원회를 삭제하고 각위원회 명칭 및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변경함. (안 제3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8인
2. 기획내무위원회 : 7인
3. 교육사회위원회 : 6인
4. 농업경제위원회 : 6인
5. 관광건설위원회 : 7인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내무위원회

가.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 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공보, 감사, 기획, 내무, 민방위재난관리, 소방, 공무원교육사무에 관한

사항

3. 교육사회위원회

- 가. 교육청,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보건환경연구원, 옥천전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교육사무, 사회복지, 보건환경사무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제위원회

- 가. 농정국, 공업경제국, 농촌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공업경제, 농정 및 농촌진흥 사무에 관한 사항

5. 관광건설위원회

- 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개발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문화관광, 건설·교통 사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